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 및 유족 증명서의 발급 등) ① 국방부장관은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원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생존 장병 및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제1항에 따른 증명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 및 유족 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역군인인 생존 장병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신청인과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장병(이하 “사망장병”이라 한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신청인이 생존 장병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이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 및 유족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 및 해당 생존 장병 및 유족에 관한 정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조(진료 지원)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료(이하 “진료”라 한다) 대상의 범위는 생존 장병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지원대상유족”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유족에 대한 진료 내용의 범위는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치료로 한정한다.

1. 사망장병의 사망 당시 배우자(해당 사망장병이 사망한 후 재혼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모

3. 사망장병의 사망 당시 자녀 및 사망 이후 출생한 사망장병의 자녀

4. 사망장병의 사망 당시 형제자매

② 국방부장관은 생존 장병 및 지원대상유족의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판단을 거쳐 해당 생존 장병 및 지원대상유족에 대한 진료 내용의 범위를 정한다.

③ 생존 장병 및 지원대상유족이 제2항에 따른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판단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입은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청일 현재의 심신장애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 판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신청서에 기재한 부상 및 심신장애에 관하여 의사가 발급한 소견서

3. 별지 제1호서식의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장병 및 유족 증명서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의사나 학계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보유한 부상 및 그 후유증을 포함한 심신상태
2. 천안함 피격사건과 제1호에 따른 심신상태 간의 인과관계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판단 결과를 신청인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진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 및 지원대상유족으로,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으로 한정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병원(이하 “군병원”이라 한다)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3.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

⑦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로 한다.

⑧ 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판단 결과를 고려하여 생존 장병 및 지원대상유족을 진료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의 방법·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진료 비용 지원)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정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존 장병이 군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진료 비용에서 치과의 보철 재료대 및 그 기공료를 제외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전액을 감면
2.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진료 비용(약제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전액을 감면. 다만,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가목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한다) 이용 비용

나. 치과의 보철재료대 및 그 기공료

3.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대상에 대한 진료 비용(약제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전액을 감면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진통·진양(鎮痒)·수렴(收斂)·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外用藥劑)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 중 해당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해당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이 부담하는 외용약제를 제외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이 경우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해당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이 부담하는 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

4. 지원대상유족이 군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60퍼센트를 감면
5. 지원대상유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진료 비용(약제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60 퍼센트를 감면. 다만,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나목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나. 상급병실 이용 비용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중 이 영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감면되는 비용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존 장병 및 지원대상유족에 대한 진료 비용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이하 “상담등지원”이라 한다) 대상의 범위는 생존 장병 및 지원대상 유족으로 한다.

② 상담등지원은 지원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현역군인인 생존 장병: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실시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

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상담 등

나.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심리적 고충 해소를 위하여 운영하는 심리지원 서비스

2.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 및 유족: 국가보훈부장관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통해 실시

③ 상담등지원의 내용은 심리상담·심리검사, 군병원 또는 보훈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등으로 한다.

④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심리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상담등지원 신청서에 제2조에 따른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 및 유족 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취업지원) 생존 장병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1조의3 및 제61조의4를 준용한다.

제7조(기관 간 협조) ① 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원 업무 및 이 영 제2조에 따른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 및 유족 증명서의 발급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각 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협조 요청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해야 한다.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에 관한 사무

② 국방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 및 유족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호				
천안함 피격사건 [] 생존장병 [] 유족 증명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주소			전화번호
제출용도		천안함 특별법에 따른 의료지원, 심리지원 및 취업지원 신청		
위 사람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 []유족)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 방 부 장 관 직인				
우	주소	팩스		
담당부서명:	과장:	담당자:	전화	

천안합 피격사건 생존 장병 및 유족 증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대상자	소 속	생년월일
	군 번	전화번호
	성 명	신 분 ☐ 현역 ☐ 예비역 ☐ 유족
	주 소	
신청인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대상자와 신청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 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 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 ☐ 부동의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의
의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제시로 같음 할 수 있습니다)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신청안내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비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개인이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첨부서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장병 및 유족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피해 신청서를 별도 제출하여 피해판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자	소 속	주민등록번호
	군 번	성 명
	주 소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정보제공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 소	

제공목적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장병·유족 증명 및 의학자문 자료로 활용
확인사항	자료 제출 시 생존장병·유족 증명 및 의학자문의에게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자료는 미 제출 또는 내용 삭제 후 제출 바랍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생존장병 및 유족 증명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에 해당하는 정보주체(신청인 포함)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국방부장관 및 해군본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 정보의 활용 목적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방부에 천안함 생존장병 및 유족 증명서 발급 및 피격사건 당시 부상·질병과 현재 심신장애 간 해당 진료과 의학자문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및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 군 및 민간의료기관 의무기록, 상담기록, 발병경위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국가보훈부 심사결정서, 상이구분 심사를 위하여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 제출한 관련자료
- 수집하려는 정보의 보유기관 : 국가보훈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군 및 민간의료 기관, 국방부 및 각군본부 산하 각 기관 및 부대
-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국방부, 해군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군 보건의료기관의 장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장병 및 유족 증명 및 피격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신청인 포함)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증명서 발급 및 피해사실관계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 판단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소 속			주민등록번호	
	군 번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피해사실	피격사건 당시 병명 / 상이부위			피격사건 당시 진료·검사 의료기관명	
	신청일 기준 심신장애			진료받은 일자	
	최근 진료·검사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전화번호	
	심신장애 관련 진술 (사건 당시 부상·질병 및 이후 심신장애에 대해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서술)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체적·정신적 피해판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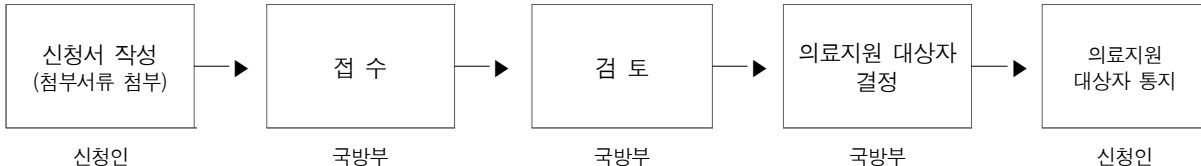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부상(질병을 포함합니다) 및 심신장애에 관하여 의사가 발급한 소견서 3. 별지 제1호서식의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장병 및 유족 증명서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신청안내

- 첨부서류 미비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장병 및 유족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피해판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상담등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관계구분		[] 본인(생존장병)		[] 유족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심리 상태	[] 우울		[] 불안		[] 수면		[] 분노
	[] 트라우마		[] 자살		[] 기타		
신청 내용	[] 심리상담		[] 심리검사				
	[] 정신건강증진 교육		[] 기타()				
신청 사유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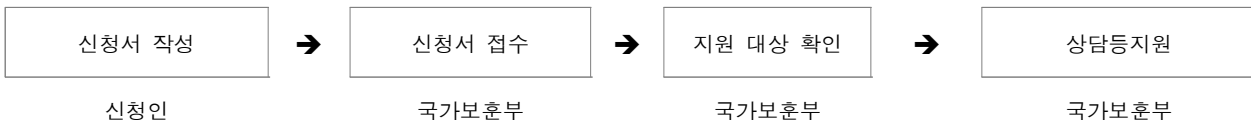
첨부서류	별지 제1호서식의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장병 및 유족 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심리 상태란’에는 현재 신청인의 심리 상태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란’에는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의 내용을 선택합니다(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란’에는 신청 배경, 상담 의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복지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6628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644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연 락 처	(044) 202 - 5651